
제85차 대학평의원회 서면심의 자료

2022. 9.



울산과학대학교
ULSAN COLLEGE

울산과학대학교학칙 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가. (기획팀) “탄소중립지원센터” 명칭을 “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”로 함
- 나. (학생복지팀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」 제32조(‘22.6.29 시행) 개정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
: 대학의 장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」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수업 영상물 정보접근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

2. 주요내용

- 가. 제63조의2제2항제3호 ‘탄소중립지원센터’ 명 변경
- 나. 장애학생 입학전형 차별금지, 정보접근 지원 등 편의 제공 추가에 따른 학칙 변경
: ‘장애학생에게 학습지원, 대학생활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.’를
‘장애학생에게 학습지원, 입학전형 차별금지 및 수험편의 지원, 수업 중 정보접근 지원, 기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’로 변경

3. 신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4. 관련규정, 관련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

- 가. 관련되는 근거 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6조, 「고등교육법」 시행령 제4조,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」 제13조제7항, 제14조, 환경부 「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·운영 지침」 중 센터의 명칭, 「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제15조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입학홍보팀(2022. 9. 14.), 교수학습지원센터(2022. 9. 14.)
- 다. 관련 위원회 심의 :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2022. 9. 15.)
- 라. 주간주요보직자 회의 사전 검토 여부 : 검토

UCS-A-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학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63조의2(산학협력단) ① “생략” ② 산학협력단 내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, 학교기업, 사업기구를 둔다. 1. 부속기관 : “생략” 2. 부설연구소 : “생략” 3. 학교기업 : 영상콘텐츠제작센터, 에너지 환경연구원(환경기술연구센터, 종합환경분석센터, <u>탄소중립지원센터</u>) 4. 사업기구 : “생략” ③ “생략”	제63조의2(산학협력단) ① “생략” ② 산학협력단 내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, 학교기업, 사업기구를 둔다. 1. 부속기관 : “현행과 같음” 2. 부설연구소 : “현행과 같음” 3. 학교기업 : 영상콘텐츠제작센터, 에너지 환경연구원(환경기술연구센터, 종합환경분석센터, <u>울산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</u>) 4. 사업기구 : “현행과 같음” ③ “ <u>현행과 같음</u> ”	
제72조(장애학생지원) ① 대학교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」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정당한 편의 제공의무) 및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<u>학습지원, 대학생활지원</u>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. ②~③ “생략”	제72조(장애학생지원) ① 대학교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」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정당한 편의 제공의무) 및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<u>학습지원, 입학전형 차별금지 및 수험편의 지원, 수업 중 정보접근 지원, 기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. ②~③ “현행과 같음”	장애학생 지원편의 사항추가 및 차별금지
<u><신설></u>	<u>부칙</u> 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	